

---

# 2026년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사업 [사업안내서]

---

2026. 4.

# 목 차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2. 사업 개요 .....	4
3. 세부 내용 .....	6
4.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 .....	11
5. 선정 방법 .....	16
6.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19
7. 신청 및 접수 .....	22
8. 문의처 .....	25

## 1. 추진 배경

- 생성형 AI의 촉발로 전세계가 AI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은 AI 인프라 확보에 사활
  - \* 트럼프 2기 정부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UAE, 아르헨티나 등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는 등 미국 주도 AI 인프라 생태계 집중('26.3월)
- 특히, AI 전환 등 AI의 산업적용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센터는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써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
  - 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한 엣지 인프라 확산과 더불어, 메타 등이 도입한 텐트형 데이터센터의 조기 구축으로 AI 인프라 확충을 견인
    - \* AWS 등 글로벌 기업 등은 원격진단, 자율주행차 등 초저지연 서비스를 위해 활용
- 데이터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자원의 활용과 방대한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가능케 하는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급속히 성장中
  -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4년 2,427억달러(약 348조원)에서 '32년 5,848억 달러(약 839조원)로 2.4배 달성 전망 (Fortune business insight)
-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도 AI인프라 수요 등으로 인해 성장중이나\* 주로 대규모\*\* 구축에 집중하여 엣지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수요 대응엔 한계
  - \*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4년 6.9조원에서 '28년 7.6조원으로 연평균 10.1% 지속적인 성장 전망('25, IDC)
  - \*\* '29년까지 구축을 추진 중인 민간 데이터센터는 34개로 추정되며, 수전용량고려 시 대부분 AI 데이터센터로 추정('25, KDCC)
  - 반면, 글로벌 시장은 자율주행, AR/VR, 디지털헬스 등 특화산업에 소형 AIDC가 활용되며 급속히 성장중이나 국내 시장은 시작 단계
- 우리도 소형 AIDC기반의 지역 특화 서비스 개발 등 산업별 AI혁신을 확산하고, 산업수요의 빠른 해소 및 AI 서비스 기업의 성장 모색 필요

## 2. 공모 개요

###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제조, 모빌리티 등 특화분야 맞춤형 소형 AI 데이터센터 발굴 및 이를 활용한 특화 AI 서비스 개발 등 중소 AI기업 성장 지원
- (추진방향) 국가균형성장 등을 고려한 권역 중심 AI 인프라 확보 및 권역별 주요 특화산업 분야 육성 추진

⇒ 5극 3특 등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형 AIDC 활성화로 균형있는 'AI 고속도로'** 추진

### □ 주요 내용

-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소형 AIDC 발굴
  - IaaS 운영기업(CSP 등), 지역·대학교 IDC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 소형 AIDC로 전환 또는 컨테이너형 구축 등 소형 AIDC 발굴 및 활용 지원
  - 지역 특화산업 및 AI 중소기업 수요를 고려한 소형 AI데이터센터內 AI 인프라, 클라우드 등 컴퓨팅자원 AI 중소기업 제공 지원
- 소형 AI 데이터센터의 AI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제조, 의료, 모빌리티 등 특화 산업군별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별 다수의 AI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지원
    - \* 민간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AI 중소기업 확대 추진
    - \* 소형 AIDC를 활용하여 AI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AI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되, 최소 6개 이상 기업 참여
  - 특화 AI 서비스의 조속한 지역 확산을 위해 개발되는 서비스는 지역 수요기업·기관과 실증 추진

분 야	과제당 예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3개 과제(지역) ※과제별 최대 30억원 내외	▶(지원내용) 소형 AIDC 발굴 및 활용, AI 중소기업 서비스 개발 및 수요처 실증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지원대상) 의료, 모빌리티 등 특화산업에 활용 가능한 소형 AIDC 발굴·운영 및 지역 특화산업분야 AI 서비스 개발, 지역 수요기업 실증 등이 가능한 기관·기업 컨소시엄

## □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년 12월 (최대 2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26년 총 3개 과제(지역), 총 89.28억원 내외 지원

※ 과제당 최대 30억원 내외 지원(3개)

- 지원예산은 협약체결 후 전체 정부지원금을 2~3회에 나누어 지급 예정
  - \*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 사업비는 규정 및 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편성
  - \* 해당 사업은 R&D가 아닌 비R&D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 기술료 미징수
  - \* 협약 사업비는 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확정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국비)과 기관·기업의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구성하고, 기업의 민간부담금 편성은 R&D 규정 준용
- (지방비 매칭) 주관기관이 지자체·지역 ICT진흥기관 등의 경우 지방비 30%이상(국비 대비) 현금 매칭 필수

###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

#### 1.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 2.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 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6. 2. 1.)」 [별표1]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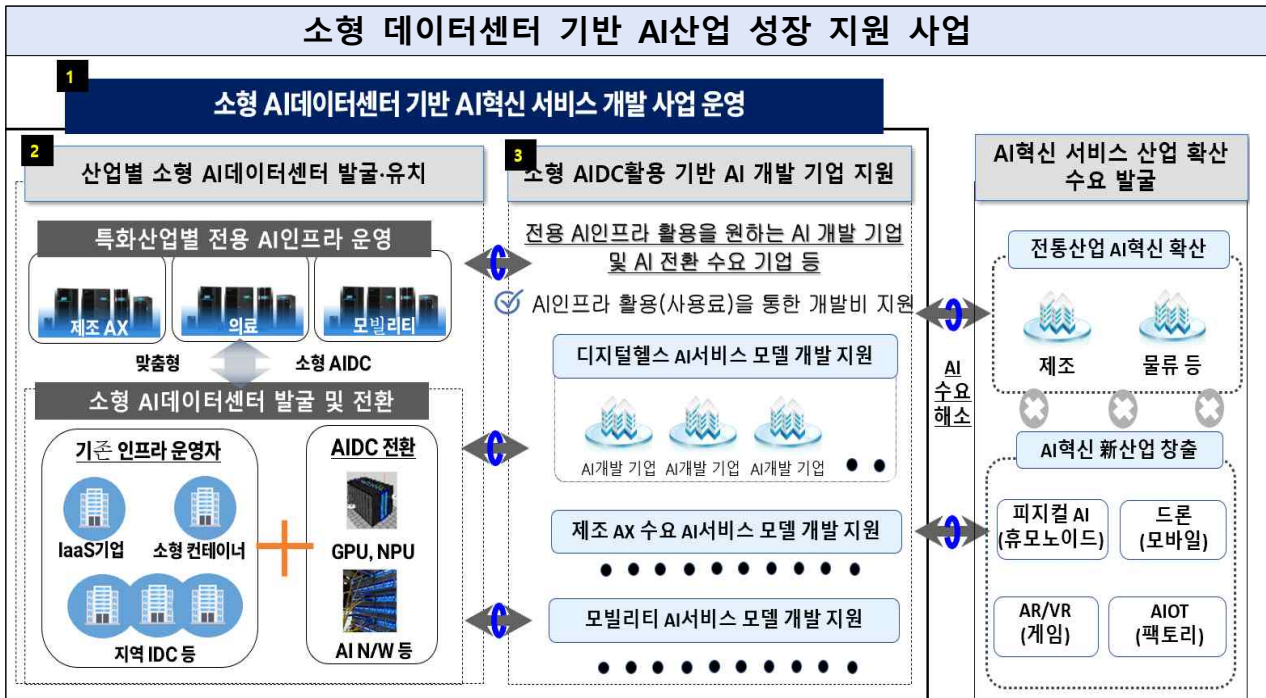
### 3. 사업 세부 내용

#### □ 지원 방향

- 제조, 모빌리티 등 특화분야 맞춤형 소형 AI 데이터센터 발굴 및 이를 활용한 특화 AI 서비스 개발 등 중소 AI기업 성장 지원

- (성과목표) 지역 특화산업 AI서비스 개발을 위한 소형 데이터센터 발굴 및 활용, 소형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AI 중소기업 개발 지원 6건 이상

####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사업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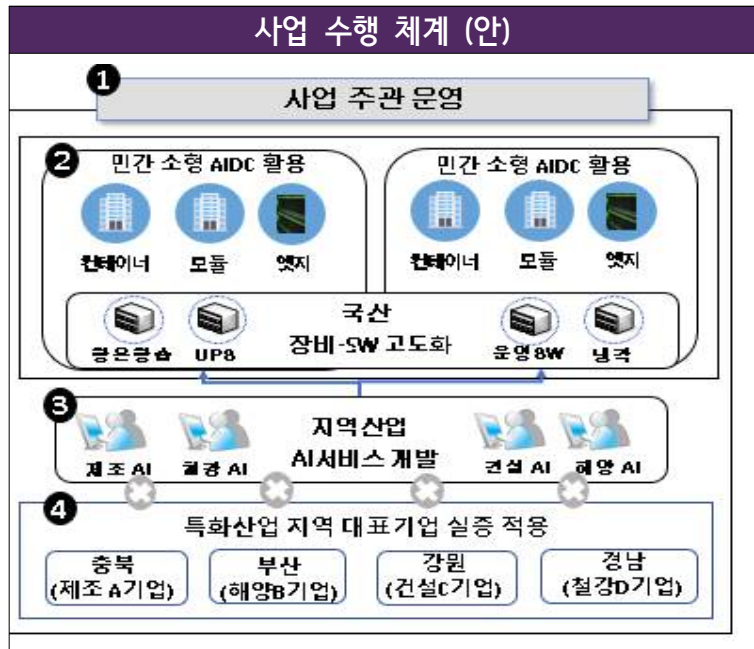
#### □ 지원 사항

- (지원대상) 지역 소형 AIDC 발굴·운영 및 지역 특화산업분야 AI 서비스 개발, 지역 수요기업 실증 등이 가능한 기업(기관) 컨소시엄
  - ※ 기업, DC 운영사, 대학교, 광역(기초)지자체·지역ICT진흥기관, 병원 등 참여 가능
- (주관기관) 민간 AIDC 발굴·활용 및 AI 중소기업 서비스 개발 지원, 수요기업 실증 및 성과 확산 등 사업 전반의 수행 및 지원 역할
  -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지역과 해당 지역 특화산업 분야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형 AIDC기업 또는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관(지자체, 진흥기관 등) 가능

- (소형 AIDC) AI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기 위해 필요한 소형 AIDC를 운영하는 기업 및 대학교 등 민간 소형 AIDC만 활용 가능
  - ※ 주관 및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 대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컨소시엄 구성엔 포함되지 않으나 AI개발 기업들의 활용 대상인 소형 AIDC 역할만으로도 사업 참여 가능
  - ※ 공공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자체, 진흥기관 등의 소형 AIDC 활용은 제외
- (AI개발 중소기업) 소형 DC를 활용하여 AI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중소 AI기업으로, 사업 컨소시엄內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
  - ※ 1차년도 참여하는 AI개발 중소기업 中 다년도(최대 2년) 개발 지원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중소 AI개발 기업은 해당 지역 기업 참여 50%이상 필수
  - ※ 2차년도 신규 AI개발 중소기업 참여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
  - ※ AI 중소기업 지원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상 편성하되, 기업별 4.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요기업) AI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서비스를 활용 및 검증 할 수 있는 기업, 병원 등 지역 대표 수요기업은 실증기업으로 참여 필수(복수 권장)
  - ※ 해당 수요기업에 대한 별도 국비 지원은 불가/컨소시엄 구성 외 실증기업으로 참여
  - ※ AI 중소기업은 개발실증이 가능한 AI 서비스 및 실증기업을 수행계획서에 명확히 제안하여야함.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년 12월 (최대 2년 지원 가능)
  - ※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한 연차 평가 등을 통해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 국비 상황에 따라 예산 및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지원규모) ’ 26년 총 3개 과제(지역) 내외 지원, 총 89.28억원 내외
  - ※ 과제당 최대 30억원 내외 지원 및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 수 및 지원규모 최종 확정
- (지원내용) 소형 AIDC 활용, AI 중소기업 서비스 개발 및 실증, AI개발 과제 사업화 확산(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다만, 동 사업비를 통해 소형 AIDC 운영에 필요한 AI 가속기(GPU, NPU 등) 및 장비·SW 구매 비용 등은 편성 불가
  - 주관기관이 지자체·지역 ICT진흥기관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국비) 대비 지방비 30%이상 현금매칭 필수, 기업의 민간부담금은 R&D 규정 준용

< 사업수행 구성 및 수행체계 >

사업 수행 구성
①(주관기관) 민간 AIDC 발굴·활용 및 AI 중소기업 서비스 개발 지원, 수요기업 실증 지원 등 사업 전반의 수행 및 지원 역할
②(민간 AIDC) AIDC 운영 및 AI 인프라 등 AI 중소기업 활용 지원
③(AI중소기업) 소형 AIDC 활용을 통한 지역특화 AI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참여기관으로 참여 필수
④(실증기업) AI 서비스를 기업 내 업무프로세스 활용 및 실증 ※ 제안시 실증 기업 명시



□ 제안 요청 사항

- (지역 특화분야 선정) 동사업을 통해 추진할 지역 특화 산업분야 선정, 관련 국내외 시장 환경 및 기업 현황, 선정 배경, 지역의 강점 등 포함
  - ※ 소형 AIDC를 활용하여 개발·실증할 산업 분야를 선정하되 복수 특화분야 제안 가능
  - 선정된 특화분야 산업의 소형 AIDC 필요성, AI서비스 적용 및 활용(안), 향후 기대효과 등 동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분야에서 예상되는 성과 등 포함
- (소형 AIDC 활용 방안) 지역 특화산업 및 AI 개발 중소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소형 AI데이터센터 활용 방안 제시
  - ※ 소형 AIDC운영 기업은 서울·수도권 소재 가능하나 동 사업에 활용되는 소형 AIDC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를 고려하여 활용 지역 제안 필요
  - 지역 특화산업 특징 및 관련 AIDC 현황, 시장 환경 및 기업 규모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형 AIDC 활용 방안(복수 가능) 및 인프라 구성 현황 제시
  - ※ AI연산자원 규모, 전용 할당 방안 등 지역 특화산업 특성 및 AI개발 중소기업 수요에 적합한 AI인프라 구성 필요
  - 제안시 소형 AIDC를 발굴·선정 등 확정하여 참여하되, 선정 후 특화분야 관련 AI개발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굴 및 활용 가능(전담기관 승인)

- AI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의 개발단계(학습·추론·실증)에 따른 유연한 자원 제공 방식 등 효율적 AI데이터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필요
- (특화분야 AI서비스 개발) 소형 AI데이터센터를 활용하여 제조, 의료, 기계 등 지역 특화 산업분야 관련 AI서비스 개발 방안 제시
  - 지역 특화산업 관련 AI 서비스 모델(6건 이상) 제시 및 AI 중소기업의 AI 서비스 개발 세부 추진계획 및 방안 구체적 제시
    - \* (예시) AI 모델 및 알고리즘, 학습·추론 방안, 데이터 확보방안, 사업기획 및 개발 방법론, 개발 및 고도화 추진계획, AIDC 활용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
    - \*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AI개발 중소기업은 사업 컨소시엄내 참여기관으로 필수 참여 (6개 이상) 및 컨소시엄 내 AI개발 중소기업 선정 및 참여 이유 등을 명확히 제시
  - AI 서비스의 조속한 지역 확산을 위해 개발되는 AI 서비스의 지역 수요기업·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방안 마련
    - \* 사업 기간 내 수요기업 실증 방안 제시 필요 (과제에 따른 PoC 수준의 실증안 등)
- (지역산업 확산 및 성과제고 방안) 동 사업 추진 이후 소형 AIDC 등의 지역 AI인프라로 활용 방안 및 개발된 AI 서비스의 수요처 활용·수요 확보 등 정부 지원 후 자생적 확산 방안 제시
  - \* 지속적인 수요기관 매칭(특화산업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앵커기업 등) 방안 등
  - AI 서비스의 후속 실증 확산 방안 및 글로벌 진출 방안 등 우수 과제에 대한 사업화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 AI서비스 실증 후 지역 내 특화산업군 대상 실증 및 글로벌 진출 등 성과 확산 계획 제시
  - 개발된 AI서비스와 소형 AI데이터센터 활용 성과를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 확산 방안 제시 (중장기 로드맵 등)
  - 사업 성과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과제간 공동 협의체\* 운영 및 전담기관의 관련 행사 등(성과보고, 네트워킹 등) 필요한 성과 확산 활동 제안
    - \* 동 사업 과제간 연계 및 시너지 극대화 등을 위해 전담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AI산업 활성화 협의체(안)' 등을 운영하고 공동 사업 발굴·운영 및 기술 교류회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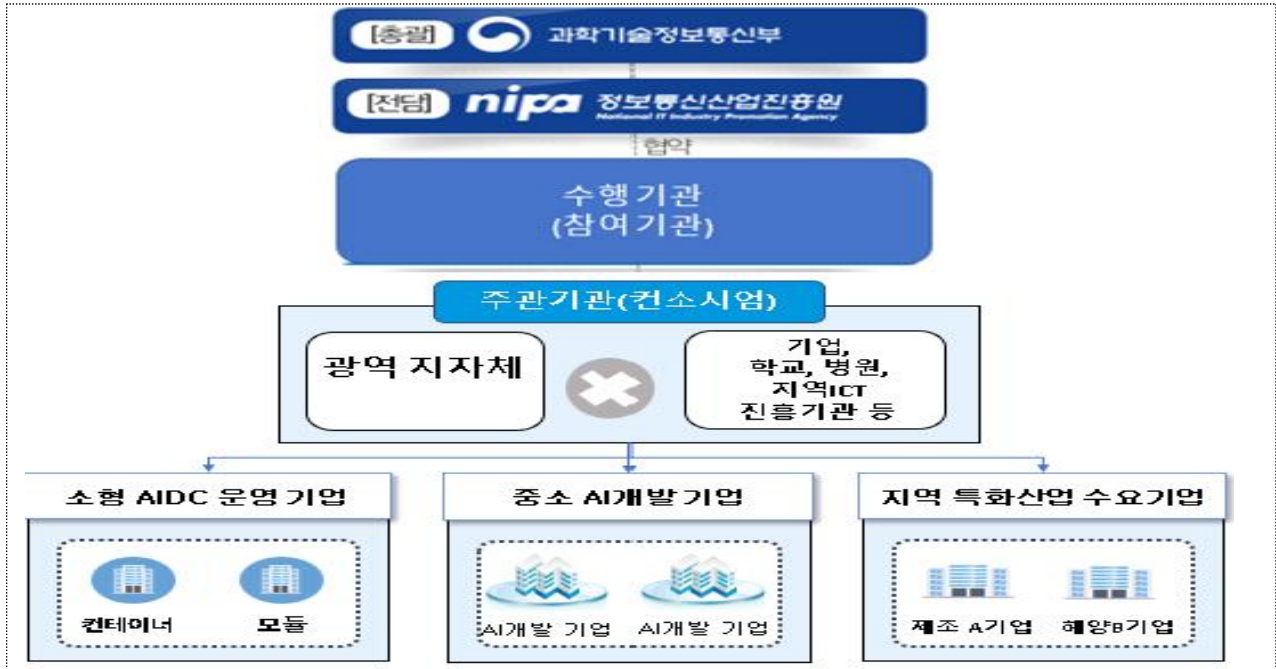
□ (평가 기준) 신청서류 등의 서류검토 및 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사업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추진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 간 부합성</li> <li>- 사업의 방향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li> <li>- 사업 수행의 필요성 및 당위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li> </ul>	10
	성과 파급력/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규모 및 성과 계획의 적절성</li> <li>- 사업 성과(성과지표)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 명확성, 사업 규모 적절성 등</li> <li>○ 동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경제·사회 파급효과 및 실현 가능성 등</li> </ul>	10
사업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50)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내용 구체성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li> <li>- 사업 계획 및 수행 내용의 구체성(1년차) 및 연차별 사업 체계성, 연속성 등 중장기 사업계획(2년)의 적절성</li> </ul>	10
	소형 AIDC 준비도 및 운영방안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AIDC 현황 및 환경 등 준비 현황, 조기 활용 가능성, 발굴·유치 관련 세부 계획의 적절성</li> <li>○ 소형 AIDC 형태 및 분야의 적절성, 인프라 확보 등 사업 기간내 운영 및 AI 개발 활용 방안 등의 구체성</li> </ul>	15
	지역 AI 산업 성장 방안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AIDC를 활용한 특화산업 AI 서비스 개발 추진 방안의 적절성</li> <li>- 특화산업 적용 AI 서비스 개발 기업의 구성 및 추진 방안 적절성</li> <li>○ 특화분야 수요 명확성, 개발 서비스의 실증 연계 실현성</li> <li>- 지역 수요기업 실증 및 적용 등 확장성을 고려한 수행 구체성·적절성</li> </ul>	15
	성과 확산 방안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및 산업 수요, 개발된 AI서비스 수요처 활용·수급 가능성, 자체 실증수요 확보 및 수요처 확대 방안, 해외진출 등 확산 가능성</li> <li>○ 소형 AIDC 등의 지역 AI인프라로 활용 방안 등 성과 활용 적절성</li> </ul>	10
사업 관리 능력 (30)	사업관리 전문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인력 등 조직 수행능력 적정성</li> <li>- 동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안정성</li> <li>○ 사업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li> <li>○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li> </ul>	15
	재원 확보계획 및 사업비 구성 적정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의지 및 기여도</li> <li>- 지자체 정책·제도적 지원환경 및 추가 계획, 종료후 자립화 지원 방안 등</li> <li>- 지방비 및 민자 확보 계획, 재원조달(지방비등) 신뢰성(조례, 기금 보유 등)</li> <li>○ 사업 수행 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li> <li>○ 예산 집행 세부 계획의 적정성 및 투명성</li> <li>- 지방비·민간부담 매칭 비율, 바·세목 구성내역 등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li> </ul>	15
<b>합 계</b>			<b>100</b>

## 4.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 □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li> <li>▶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li> </ul>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li> <li>▶ 사업관리, 예산집행, 중간점검, 정산, 성과평가 등 수행</li> </ul>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에 따른 과제 수행계획 심사 등 선정평가</li> <li>▶ 과제 주요 성과 등 최종 결과 평가</li> </ul>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과제 대상 과제 수행계획 및 사업비 검토·조정</li> <li>▶ 과제 관리에 필요한 심의 등</li> </ul>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화산업 선정, 소형 AIDC발굴, AI개발 중소기업 지원, 지역 대표 수요기업 실증 지원 등 사업 운영</li> <li>▶ 사업 수행 관리</li> </ul>
소형 AI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중소기업이 활용할 AIDC 제공 민간 기업(기업/대학교 등)</li> </ul>
중소 AI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 DC를 활용하여 AI서비스 개발 및 수요기업 실증</li> </ul>
지역 특화산업 실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산업 관련 수요 기업</li> </ul>

□ 추진 일정

추진절차	담당	주요내용	일정 (안)
사업 공고 및 접수	(NIPA)	· 사업 공고 (NIPA,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	4월 5주~6월 3주
▼			
과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서면·발표평가	6월 4주~6월 5주
▼			
과제 심의·조정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7월 1주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 최종 과제 선정 및 통보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7월 2주
▼			
협약체결	(NIP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등	~7월 3주
▼			
사업비 지급	(NIPA)	· 사업비 지급 (수행기간 중 2~3회 분할지급)	-
▼			
과제 수행 및 지원	(NIP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수행기관별 과제수행, 협약변경 등	7월~12월
▼			
점검	(NIPA)	· 진도점검	9월~10월(예정)
▼			
과제 수행 종료	(수행기관 → NIPA)	· 과제종료 및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추진실적 등)	12월
▼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 수행결과 평가	'26년 12월
▼			
사업비 정산	(NIP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27년 1~2월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과제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중간점검 실시
  -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 지표 달성 여부,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 \* 수행기업은 중간보고서,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행 부진, 사업비 유용 등), 전담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협약 해약 등 기준 >

1.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또는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협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담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기금사업 점검, 수행상황 보고, 사업결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협약 해약 사유 중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 조치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협약 등의 해약) 중

- (결과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흡(60~69점),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평가
  - 평가결과 7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심의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12월 말까지 제출 협조 (상세 일정 및 평가 계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

□ 협조 사항

- (성과 조사) 사업(협약)기간 이후 5개년간 사업성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조사에 대한 제출 협조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결과 평가 후(27.1~) 추진하며,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법인에 지급할 정해진 표준수수료 예산 편성 필요

< 총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비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VAT 포함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00천원	
30억원 이상	2,100천원	

\*위탁정산 수수료의 경우 정산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자리) 과제 신청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귀속) 사업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지적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 선정, 심의, 점검단계에서 개발 서비스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장치, 관련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제안사 자체 구매, 임차 등으로 권고할 수 있음
  - \* 과제수행계획 대비 지나친 범위의 구매/소유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범위로 조정/감소될 수 있음
- (성과 홍보) 선정기업은 전담기관(NIPA) 요청 시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할 수 있는 전시회·컨퍼런스 등 참석에 협조하여야 함
  - \*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 항목에 편성하여 활용 가능
- (기타)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대내외 협조자료 요청시 성실히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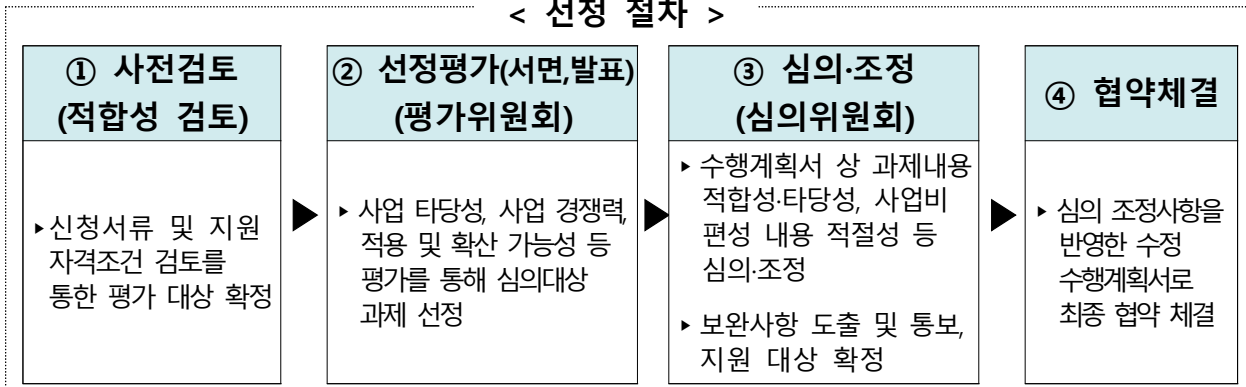
## 5. 선정 방법

### □ 선정 절차

- 신청서류 등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후, 사업계획 심의·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서류평가는 접수과제 수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예정

#### < 선정 절차 >



### □ 단계별 평가 기준

- (1단계) 사전 검토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항목) 신청자격·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 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 과제수행계획서, 붙임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 사업수행기관 지원과제 및 수행계획 중복여부
참여 제한 여부	· 사업수행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 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 민간부담금 투입비율 준수 등 과제비 산정 적정 여부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조치) 검토 결과 부적정 시, 평가 대상 사전 지원제외 등 조치
  - \* 신청 기업의 경우, 아래 신청 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여 지원해야 하며,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평가 제외(사전 지원 제외)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적용 중

○ (2단계) 선정평가(서면·발표평가)

- (개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 과제 대상 선정
- (대상) 사전 검토(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방법) 서면평가(필요시),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 \* 발표평가 대상과제는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이메일로 안내
  - \*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참석·발표 필수(오프라인 대면 평가) 참석(세부사항 추후 안내)

< 평가 점수 산출 기준 >

평가점수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도출</li> <li>※ <b>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b></li> </ul>
동점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li> <li>* 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 개최 가능</li> </ul>

- (평가기준)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 관리 능력 등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사업 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 (3단계) 심의위원회 및 지원과제 확정

- (개요) 발표평가 종합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우선순위 대상으로 과제 내용 심의

- (대상)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우선순위 대상 과제

- (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및 조정하여 지원대상 확정

※ 사전검토결과, 선정평가의견, 심의의견 등에 따른 과제내용·과제비 보완 가능 여부 협의 후 최종 확정(보완 불가 시, 차순위 과제를 지원과제로 확정)

※ 지원우선순위로 선정된 과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잔여예산을 활용한 추가 과제 선정 가능

※ 협약관련 제출서류 등 협약체결 관련내용은 선정된 기업대상 추후 안내 예정

## 6. 유의사항 및 관련 규정

### □ 공고문 유의 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기관)에게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역할 및 수행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 사업비 편성 및 관리

- 정부지원금을 받는 각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사업비 집행내역은 반드시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시 제출
  -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 예산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현금 사업비는 민간부담금 우선 집행하며, 잔액 발생 시 전액 반납
-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운영비(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서버, PC, 노트북, 프린터 등 범용성 HW 및 SW, AI가속기 등) 편성 불가
  - ※ 단, 과제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 취득의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음.
- AI 중소기업 지원비는 총 사업비의 80% 이상 편성하되, AI 중소기업(참여기관)의 기업별 4.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원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 개인정보 활용 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행·점검·조치 방안 포함)
  - \*\*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이용·제공, 개인정보보관·파기  
(상시점검) AI 서비스 관라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 윤리점검 이행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시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 제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수행기관 대상
-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관련 교육 이수\* 및 협약 체결 시 이수증 제출
  -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
- 선정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서를 지원과제 협약체결 전에 제출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과제 내용 검토, 진도 점검, 최종 평가 등 진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요구,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확인

□ 관련 규정

- 해당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 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에 따름
  -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협약서, 수행계획서, 예산 비·세목 등을 조정하여 협약하여야 함

구분	시행일자	규정명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호	2022.01.14.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2024.03.15.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97호	2025.07.25.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2022.01.14.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2022.01.14.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	2024.10.24.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9호	2024.03.15.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2024.03.15.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2021.03.31.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일부 준용	대통령령 제36163호	2026.03.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대통령령 제34920호	2024.09.2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7.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4. 30(목)~ 6. 1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NIPA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접수 절차 >

##### ① 신청서류 적정여부 등 최종 확인

- 신청전에 신청서류 적정여부(필수서류 누락여부, 파일 열림 여부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지원과제 중복여부, 과제비 적정 여부 등 최종 확인
-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가능

##### ②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 NIPA 사업관리 메인 홈페이지(nxt.nipa.kr) > 로그인(신청과제 총괄책임자) > “과제관리” > 사업공고 메뉴 클릭
- 공고의 접수상태가 접수 중인지 확인 후 해당 공고 선택하여 접수
- ※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관리시스템(nxt.nipa.kr) 과제신청 매뉴얼> 참조

#### ※ 전산 접수 시 유의 사항

-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 접수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업로드 실수 등)로든 신청 불가
- 마감시한 내 과제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작업이 완료되어야 함
- 과제접수 중 사용미숙, 시스템 접속 지연, 파일 업로드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불가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처  
(전화) 070-5151-8215 / 070-5151-8239  
(메일) [nxt\\_support@nipa.kr](mailto:nxt_support@nipa.kr)

□ 제출서류

구분		필수 여부	작성양식	비고
2026년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과제수행계획서		○	신청양식 0	· 서명·날인한 표지페이지를 계획서 내 이미지로 삽입 · HWP와 PDF 제출
붙임 1	신청과제자기점검표	○	신청양식 1	· 서명·날인한 PDF 제출
붙임 2	기관(기관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2	· 날인한 PDF 제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양식 3	· 참여인력 전원이 서명한 PDF 제출
붙임 4	평가항목참조표	○	신청양식 4	· PDF로 제출
붙임 5	직접고용계획및효과표	○	신청양식 5	· 참여인력 전원에 대해 작성 · XLSX로 제출
붙임 6	유사과제검색결과서	○	예시참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이용 · NTIS>과제참여>유사과제>정보입력 (기준유사도는 '60', 검색기간 2021년 부터 2025년까지 설정) · 다운로드한 인증서(PDF) 제출
붙임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증명원)2026년 발행본(PDF) 제출
붙임 8	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	○	-	· 기업별 관련 증빙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붙임 9	표준재무제표증명(25년)	○	-	·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을 시, 전년도 (25년)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24년) 결산보고서 제출
붙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신청양식 6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2	지자체 부담 현금 납입 약속서	○	신청양식 7	· 지자체 주관의 경우 제출 (해당시)
붙임 13	수요기관 도입의사 약속서	○	신청양식 8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4	소형DC(민간) 참여의사 약속서	○	신청양식 9	· 모든 신청기관 제출
붙임 15	발표자료	○	자유양식	· PDF/PPT로 제출
붙임 16	기타증빙	X	자유양식	· 사업화 : 수요약약서 등 · 일자리창출 : 세부계획서 등 · 그외 수행계획, 기업 기술력, 기 개발 솔루션 우수성 등 관련 해당증빙 · PDF-HWP-PPT 등으로 제출

□ 서류 작성 ·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신청서류 작성시	성과지표 목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과제별 성과 목표에 포함된 수치 필수 성과지표로 반영</li> <li>○ 수행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수치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목표치는 이후 하향 조정 불가, 최종평가지 증빙 제출</li> <li>- (외부시험인증) 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부 시험인증 기관 이용 권장</li> </ul> </li> </ul>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과제의 내용을 수행계획서 상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li> <li>○ 수행기간 내외 수행기간 전·후 수행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li> </ul>
	참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율, 참여기간 등 참여인력 관련내용은 실제 투입내용대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인력 기재, 참여율 초과 등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li> </ul> </li> <li>○ 참여인력은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 권장</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과제와 직접 관련성 있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li> <li>※ 참고 (비·세목별사업비산정및불인정기준) 확인</li> </ul>
	개인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처리 과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등 의무사항 준수</li> <li>○ 계획서 내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li> </ul>
신청서류 제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신청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가능</li> <li>○ 서류는 공모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공모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li> <li>○ <b>접수마감 시한(6.16.(화) 18:00) 엄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후 상태값 확인 ("접수중" X, "접수완료" O)</li> <li>- e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불가, 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 완료 권장</li> </ul> </li> </ul>

※ 과제 협약체결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총괄/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 이수결과 등 제출 예정

## 8. 사업 문의 상담 운영 및 문의처

### □ 사업 문의 상담

◎ 일정 : 2026년 5월 18일(월) ~ 5월 20일(수) 10:00 ~ 16:00 (점심시간 제외)

◎ 장소 : NIPA 서울평가장(가락동) 소회의실 1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대한전기협회 6층

◎ 주요내용 :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 문의 및 상담

### □ 담당자 문의처

#### [ 사업·과제 내용 및 인터넷 접수 문의 ]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클라우드팀	김민석 수석	043-931-5788	msgood@nipa.kr
		송현수 책임	043-931-5781	123@nipa.kr
인터넷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070-5151-8215 070-5151-8239	nxt_support@nipa.kr